

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

1. 개정이유

- 「법무사법」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 응시자의 시험의 일부 면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「법무사규칙」 제8조제2항의 개정
에 따라 경력 응시자가 제출하는 시험일부면제신청서 양식을 규정하
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「법무사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험일부면제신청서를 별지 제1-1
호 양식으로 신설함(안 제3조제5항 신설)

3.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

붙임과 같음

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

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험일부면제신청서는 별지 제1-1호 양식과 같다.

별지 제1-1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법무사시험) ① ~ ④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법무사시험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⑤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험 일부면제신청서는 별지 제1-1호 양식과 같다.</u></p>

<의안 소관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	
연락처	(02) 3480-1893